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072

발의연월일: 2025. 4. 23.

발 의 자:권향엽·강선우·김교흥

문진석 • 이병진 • 이성윤

임미애 · 조인철 · 허성무

홍기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연차휴가, 생리휴가,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정하고 있음. 한편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결혼, 사망 등 경 조사에 따른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가 로 정하고 있음. 그로인해 사업장마다 경조사 휴가의 운영 편차가 크 고 유급휴가 여부도 달라 노동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.

특히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거나, 심지어외조부모상에 대한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상조규정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.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시 친·외조부모 상사(喪事)를 모두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.

이에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결혼, 입양 및 친족의 사망 등 '경조사'에 대하여 법정휴가를 규정함으로써 법령을 통해 경조사 휴가에 대한

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,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62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2조의2(경조사휴가)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휴가(이하 "경조사휴가"라 한다)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경조사휴가의 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제55조에 따른 휴일,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의 기간 또는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포함하지아니한다.

② 그 밖에 경조사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0조제1항 중 "별표"를 "별표 1"로 한다.

제116조제2항제2호 중 "제66조"를 "제62조의2, 제66조"로 한다.

별표를 별표 1로 하고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경조사별 휴가 일수표(제62조의2제1항 관련)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본인	5
	자녀	1
입양	본인	20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・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3

비고: 입양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62조의2(경조사휴가) ① 사용자
	는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
	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
	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별표
	2의 기준에 따른 휴가(이하
	"경조사휴가"라 한다)를 주어야
	한다. 이 경우 경조사휴가의 기
	간은 유급으로 하고 제55조에
	따른 휴일, 제57조에 따른 보상
	휴가의 기간 또는 제60조에 따
	른 연차 유급휴가에 포함하지
	아니한다.
	② 그 밖에 경조사휴가의 신청
	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
	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	<u>한다.</u>
제80조(장해보상) ① 근로자가 업	제80조(장해보상) ①
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,	
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	
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	
따라 평균임금에 <u>별표</u> 에서 정	<u></u> 별 <u>표 1</u>
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	
상을 하여야 한다.	

- ②·③ (생 략) 제11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제14조, 제39조, 제41조, 제4 2조, 제48조, <u>제66조</u>, 제74조 제7항·제9항, 제76조의3제2 항·제4항·제5항·제7항, 제 91조, 제93조,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
 - 3. 4. (생략)
 - ③ (생 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	
제11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			
승)			
②			
1. (현행과 같음)			
2			
<u>제62</u> 조의2, 제			
66조			
3.·4. (현행과 같음)			